

사후정리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8조 특약의 무효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9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 특약의 보험료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관련 법규

사후정리특약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 9 조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회사가 정한 금액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 내에서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액은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회사가 이 보험의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에게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를 해당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 항 제 2 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별표 1> “관련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종류 중 월급여금이 있는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잔여 보험금에 대하여 월급여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단, 주계약에 부가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 중 사망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사망보장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2.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제8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1. 보험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3.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단, 보험수익자 중 1 인 이상이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수익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이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9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 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그러나 제 7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등

제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관련 법규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상기 조문 내용은 향후 관련 법규 개정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